사례중심의 공정거래법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 병 주 / 공정위 정책개발기획단장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즉, 생산업자 기타 공급업자가 유통업자 등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자가 거래처인 도매업자의 판매가격을 직접 구속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또는 도매업자로 하여금 소매업자의 판매가격을 구속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지정방법에 따라 크게 특정가격지정, 최고가격지정, 최저가격지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가격지정은 상품의 생산·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이나 가격폭을 특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고가격지정은 판매상한가격을 지정하는 것을, 최저가격지정은 판매하한가격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위한 「구속」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구속의 존재가 반드시 거래조건에 명시되어 계약상의 의무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적으로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거래거절, 리베이트의 삭감 등 경제상의 불이익이 수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는 소위 서비스가격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상품과는 달리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유통이 될 수 없어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거래중에서도 가격결정이라는 거래활동의 중심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며, 동 행위가 복수의 상대방에 대해 행해진다면 당해 상대방간의 가격경쟁은 소멸되게 된다. 나아가 가격에 의한 자원의 적정배분 등 시장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시장전체에 가격경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법 제29조제1항). 즉, 재판매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없이 곧바로 위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저작권법상 제2조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 포함)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법 제29조제2항). 이는 저작물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를 띠고 저작물의 내용이 가격경쟁에는 적합하지 않는 창조적·독창적인 문화상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용제외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전부(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등)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실제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행되고 있는 저작물은 도서, 신문 등 출판간행물에 한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99년 법개정시 예외인정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출판된 저작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법 제29조제2항).[1] 그러나, 80년대초 화장품과 의약품 품목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지정품목으로 고시·운영해 오다가 84년말 전부 지정품목에서 해제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품목은 없다.

3.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셔먼법 제1조에 근거하여 당연위법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매가격을 단지 추천할 수는 있지만 유인이나 강제에 의해 소매가격을 유지하는 어떤 행위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다. 최고 및 최저가 제한 둘다 당연위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 최고가 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변경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품과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을 결정·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사업자의 기본적 경쟁수단인 자주적 판매가격결정을 구속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감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고 있다.

4. 사례로 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선, 문서(계약서 등)상에 재판매가격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

1) 일정한 요건으로 ①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② 당해 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③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이 규정되어 있다.

단되어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본사가 결정하거나 본사와 협정을 통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위반시 계약해지, 거래중단, 출고량 조정 내지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위반시 제재규정은 없으나 판매가격을 보고하게 하거나, 파견사원에 의한 가격감시, 비밀번호를 붙여 싸게 파는 사업자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도매상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에게 물건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강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문서상에 재판매가격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대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는 위법성 여부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서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 위탁자의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위탁매매의 경우, 제조업자와 소매업자사이에 직접 가격을 교섭하는 거래에서 도매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소매업자에게 납품하도록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

■ 형식적 위탁판매계약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의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의 형태가 위탁판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금회수, 상품보관책임, 상품재고의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대방을 독립한 경쟁단위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나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결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 대리점계약서에서 대리점이 판매할 가격을 미리 정하여 주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나산은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이 현금완납이전까지 나산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미판매분에 대한 반품이 허용되므로 대리점과의 거래관계가 위탁매매이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상품에 대한 화재·손해 보험을 대리점이 가입하고 있어 상품 보관·관리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고, 물품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입행위를 하고 있으며, 반품도 총 출고금액의 10%만 인정되는 등 나산과 대리점간의 거래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위탁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도서정가제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출판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일명 도서정가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각각 구성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86년 8월 체결한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선택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단체가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6-198호, 1996. 8. 21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가 대표적 사례이다.[3]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출판사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시행을 강요한 것에 대하여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였고, 동 협회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도서정가제는 어디까지나 저작물에 관하여도 자유경쟁가격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저작물에 관하여 오로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만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며,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미 스테이트 오일사 사건

미 일리노이주 스테이트 오일사가 산하 주유소에 대해 소비자가격 최고한도를 지정하자 주유소업자가 동 오일사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최고가격지정에 대한 당연위법의 입장을 변경,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가격의 최고한도지정을 합법으로 인정하였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주유소의 독점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급자가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이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 합법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동 판결의 의미는 재판매가격 설정의 위법성 여부는 합리의 원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 결코 모든 최고가격설정행위가 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최저가격이나 특정가격의 지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연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再販賣價格維持行爲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는 유통단계에서 가격수준을 유지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재판매하는 사업자의 협력을 확보하거나 소매가격을 유지해서 자사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로 실시됨. 그러나 이는 개별사업자의 판매가격결정 등 자율적인 활동을 구속할뿐만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에 개입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소멸시키는 폐해가 있음. 공정거래법에는 당연 위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과 그밖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3) 서울고등법원, 1996. 3. 19, 95구24779